

[2025년 10월 1일 제작]

무배당 투자에강한변액연금보험

(최저연금적립액 미보증형)2404

- ※ 본 상품은 투자형 보험상품으로 은행의 예금·적금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 ※ 본 상품은 특별계정운용결과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 ※ 본 상품은 변액보험 상품으로 고객님께서 청약 전 투자 성향 및 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적합성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 ※ 본 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 변액보험운용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본 상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특별계정 투입금액으로하여 적립되고, 해약환급금에 대한 최저보증이 없으므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 해당 모집종사자는 ABL생명과 전속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입니다.□ 해당 모집종사자는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중개하는 보험대리점입니다. □
- ※ 해당 모집종사자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임을 알려드립니다.





무배당 투자에강한 변액연금보험

(최저연금적립액 미보증형)2404

변액보험의 투자기능에 유연한 자금활용 기능으로 적극적으로 미래자산을 준비하세요.



투자성향에 따른 다양한 펀드 선택 가능

• 총 49종의 다양한 펀드로 고객 선택 범위 강화

안전 장치가 있는 변액연금보험

- 펀드자동전환옵션 선택 시, 목표수익률 달성 시 펀드 적립액을 채권형 펀드 또는 MMF재간접형 펀드로 자동 이저한니다
- ※ 본 상품은 최저연금적립액 미보증형 변액보험상품으로서 최저연금적립액(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액)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중도인출, 추가납입기능으로 유연하게 자금 활용 가능

- 중도인출수수료 :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부과하며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 중도인출 시 해약환급금이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추가납입 시 추가납입수수료는 없습니다.

다양한 연금지급방법 및 연금전환 기능 선택 가능

• 연금개시 전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종신연금형(보증기간부, 보증금액부),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의 선택이 가능하고, 전환 조건 충족 시 (무)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 (무)하모니변액연금전환특약, (무)LTC연금전환특약, (무)6대질병연금전환특약 가입으로 다양한 형태의 연금활용이 가능합니다.

보험료 할인 혜택 (적립형에 한함)

- 주계약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시 주계약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금액의 2.0% 할인
- 주계약 기본보험료 200만원 초과시
 주계약 기본보험료 200만원 초과금액의 2.5% + 20,000원 할인

다만, 할인금액은 주계약 기본보험료의 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최저연금적립액: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
- ※ 이 계약은 최저연금적립액 미보증형으로, 연금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최저연금적립액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 최저연금적립액 미보증형의 경우, 최저연금적립액 보증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대신 연금 지급 개시시점에 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점점 길어지는 노후생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습니다.

저금리 · 고령화 시대의 대안이 필요한 시점

고령자 가구는 늘어나고 있고, 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취업을 원하는 고령자도 늘고 있습니다.

○ 고령자 통계 분석 [출처: 통계청, 2024 고령자 통계(202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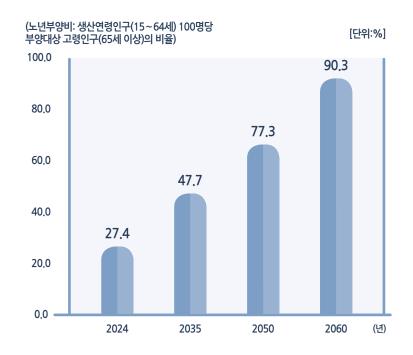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의 적기는

바로 지금 입니다!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나의 노후생활! 준비는 지금 당장, 스스로 해야 합니다!

오 노년부양비 [출처: 통계청, 2024 고령자 통계(2024.09)]



나의 투자 성향은?

자신의 투자 성향을 이해하고 투자를 시작하세요.

변액보험에 매력을 느끼는 당신!!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투자로 인한 원금 손실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분
- 자신만의 투자원칙을 가지고 있는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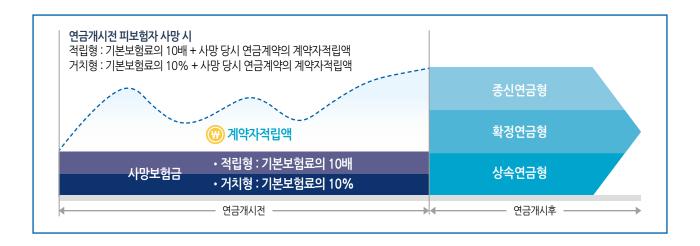
⇒⇒⇒ 청약 전 투자 성향 및 보험가입 목적 등을 파악하기 위한 변액보험 가입 성향진단(적합성 진단)을 받으세요~!

	투자성향	추천 펀드
위	위험선호형	성장형 / 중소형Best주식재간접형 /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 베트남그로스주식재간접형 유럽주식재간접형 / ELS지수연계솔루션재간접형 글로벌테크놀로지주식재간접형 / 빅데이터국내주식형 미국그로스주식재간접형 / 코리아인덱스형 미국주식인덱스(환오픈형) / 글로벌착한기업ESG 미국테크TOP10주식형(환오픈형) / 미국자사주고배당주식형(환오픈형)
점 도	적극투자형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주식혼합형/Ko-BRICs주식형/BRICs주식형 Index혼합형/글로벌리츠형/글로벌인덱스리스크컨트롤형 K200리스크컨트롤형/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밸류고배당주식재간접형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형/인컴앤그로스재간접형/유럽배당주식재간접형 인디아포커스재간접형/월드와이드컨슈머주식재간접형/팀챌린지자산배분C형 인공지능팀챌린지자산배분형/글로벌리치투게더주식재간접형/골드/탑픽스
	위험중립형	글로벌이머징마켓혼합재간접형 / 혼합간접형 /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 /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글로벌하이일드채권재간접형 / 재팬인덱스형
	안정추구형	채권형 /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고배당포커스30채권혼합재간접형 / 스마트롱숏재간접형
	위험회피형	단기국공채재간접형 / MMF재간접형

[•]모엄계약사의 면액모엄 가입성양 신난에 따라 펀느의 선택이 세안될 수 있습니다.

'묻지마 투자'는 이제 그만!! ABL생명의 전문 설계사와 꼼꼼히 상담 후 가입하세요~

보험금 지급 예시



가입을 위한 안내

보험기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피보험자 가입나이	연금개시나이	보험료 가입한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적립형, 거치형)		10년 ~ 11년	5년납				
• 계약일부터 연금개시나이		12년 ~ 14년	5년납, 7년납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조시여그형 : 여그게시나이	저「리비형이	15년	5년납, 7년납, 10년납	월납 일시납	만 15세 ~ (연금개시나이 - 연금개시전보험기간)세	45세 ~ 80세	20만원 이상
 종신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연금개시나이 연계약해당일부터 확정 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까지 상속연금형: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16년 이상	5년납, 7년납, 10년납, 11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5)년납				
	거 치 형	5년 이상	일시납				1,500만원 이상

-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보험종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특약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가입나이는 주계약과 상이하므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피보험자가 남자인 부부계약의 최저 연금개시나이는 48세입니다.
- 연금지급형태를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로 선택한 경우, 최대 연금개시나이는 "100세-보증지급기간+1"세입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

주계약

연금개시전	지급사유	보장내용
사망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 적립형 : 기본보험료 10배 + 사망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액 • 거치형 : 기본보험료 10% + 사망당시 연금계약의 계약자적립액
연금개시후	지급사유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 기준

주계약

연금개시	후				지급사유	보장내용		
			중	성액형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보증지급기간 : 10년 ~ 40년 / 100세)		
	총 신 연 급 형	개인계약 / 부부계약 (주피 보험자)	처	 증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부부계약의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잔여분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연액이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10%)로 증가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 보증지급기간 후의 연금연액: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보증지급기간: 10년 ~ 20년)		
	형 보증기 간 부			소득 보장형	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기간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기간 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추가로 지급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보증지급기간 : 10년 ~ 20년)		
연금			부부계약 (종피보험자)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보증지급기간 이후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 종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주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지급될 연금연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i>종</i> 신연금형 ㅂㅈ그애ㅂ		일반형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다만,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 이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도록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세1 선택시 계9 연금 자기가 (1-노후설계		계약자적립액(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정한 제1연금연액		
			아형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제2연금기간 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연금개시	후_				지급사유	보장내용		
					연금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사이 이느 경우 여그개시호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노후설계자금 선택시		

연금개시후	지급사유	보장내용
확정연금형	연금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급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지급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노후설계자금 선택시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나누어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한 연금연액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 기준

주계약

연금개시후	지급사유	보장내용
상속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1차년도 연금연액: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계약자적립액(노후설계자금 선택시계약자적립액에(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의 1년 후 이자액을연금개시시점으로할인한 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계산한 연금연액(다만, '1년 후 이자액' 및 '할인한 금액'은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계산) 2차년도 이후연금연액: 「연금개시시점의연금계약계약자적립액(노후설계자금 선택시계약자적립액에(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금액)에서 1차년도연금연액(계약관리비용 포함)을 차감한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산출방법서에따라계산한직전 1년간의이자상당액

- 1. 계약자는 약관 제22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연금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변경할 수 있고,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 2.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은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라'목의 계약자적립액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반영되는 기간중에는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액도 변경됩니다.
- 3. 노후설계자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계약자가 선택한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노후설계자금 지급 신청일'까지 매월 계약해당일에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차감하고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이 0%인 경우 노후설계자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 전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연금연액이 산출됩니다.
- 4. 위에서 정하는 '노후설계자금 지급 신청일'이란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을 신청한 날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노후설계자금의 지급을 신청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일을, 확정연금형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을 '노후설계자금 지급 신청일'로 합니다.
- 5. 연금연액은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연액에 부과되는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계산됩니다.
- 6. 연금연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 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연액도 변경됩니다. 또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 해당 연도 연금연액은 직전 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과거 해당 연도와 동일한 공시이율(또는 최저보증이율)이 적용된 연도'의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자유형)의 제1연금연액은 공시이율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 7. 이 보험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계약일부터 5년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이내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0.5%를 최저한도로 합니다.
- 8. 연금연액은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9.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체증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계약자가 선택한 체증률(5% 또는 10%)로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보증지급기간 경과 후의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까지 체증된 연금연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6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까지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 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소득보장형의 경우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한번이라도 변경된 경우 보증지급기간의 실제 연금연액은 보증지급기간 이후 연금연액의 50% 또는 100%를 더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6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지급기간이 후 최초 도래하는 연금연액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공시이율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연금연액은 직전 연도의 연금연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 11.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연금개시후 보증지급기간 중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다만, 보증지급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 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12.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 피보험자(부부계약의 경우 주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잔여 보증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13. 종신연금형 보증금액부(자유형)의 경우 계약자는 연금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사'목 및 제4호의 '라'목에서 정하는 제1연금연액과 제1연금기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1연금기간은 5년이상 10년이하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제1연금기간 동안 지급되는 제1연금연액의 총액은 연금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 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의 10%이상 80%이하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14.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에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시점의 연금사망률 및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을 지급합니다.
- 15.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확정된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각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60년)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 16. 연금개시후 피보험자가 생존할 때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의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된 연금지급기간) 동안 잔여 보증지급기간(확정연금형의 경우에는 확정된 연금지급기간)의 연금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계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고의사고(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나 보험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나고 연금개시 전보함기간의 종료일 이전에 자살한 경우는 제외)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선택특약

구 분	지급사유	보장내용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 중 하나의 사고로 인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주계약 및 주계약에 부가된 특약 (다만, 갱신부 특약은 제외)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 위 특약에서 보험금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지급하여 드립니다.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특약은 적립형에 한해 가입 가능합니다.
- 위 특약에 대한 계약소멸사유 및 납입면제사유는 보험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약공제금액 예시표

적립형

예시 기준: 기본보험료 30만원, 남자 40세, 10년납, 월납, 연금개시나이 60세, 단위:원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상
해약공제금액	923,143	769,286	615,429	461,571	307,714	153,857	0	0
해약공제비율	25.6%	10.7%	5.7%	3.2%	1.7%	0.7%	0.0%	0.0%

거치형

예시 기준: 기본보험료 5,000만원, 남자 40세, 일시납, 연금개시나이 60세, 단위:원

경과시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7년이상
해약공제금액	0	0	0	0	0	0	0	0
해약공제비율	0.0%	0.0%	0.0%	0.0%	0.0%	0.0%	0.0%	0.0%

- 해약공제금액은 계약해지를 할 때까지의 경과기간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때 계약자적립액에서 실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 해약공제비율은 이미 납입한 주계약 기본보험료 대비 해약공제금액의 비율입니다.

보험료 예시표

특약보험료

기준: 20년만기 전기납, 주계약 월납입보험료 50만원, 월납, 단위: 원

구분		남자		여자		
TE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무)보험료납입면제특약	615	1,498	4,802	179	524	2,346

- 피보험자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 관련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특약은 주계약 월납입보험료 및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달라지며, 연령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별계정이란?

특별계정은 적립액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변액연금보험은 자산운용에 있어 자산을 다른 보험종류의 자산과 구분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용합니다. 이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대한 투자위험을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자산운용 손익의 정확한 배분과 자산운용의 효율화를 위해 특별계정을 설정함으로써 변액보험만의 자산을 독립하여 관리, 운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펀드의 특별계정 운용보수

이 상품은 49개의 펀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님의 투자성향에 맞추어 다양한 펀드 변경을 통하여 분산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 분	기 준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채권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3510%	0.0100%	0.0100%	0.0195%
성장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955%	0.1600%	0.0100%	0.0195%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205%	0.0100%	0.0100%	0.0195%
글로벌이머징마켓혼합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205%	0.0100%	0.0100%	0.0195%
주식 혼 합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3610%	0.1000%	0.0100%	0.0195%
Ko-BRICs주식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10%	0.0100%	0.0100%	0.0195%
BRICs주식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10%	0.0100%	0.0100%	0.0195%
Index혼합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10%	0.0100%	0.0100%	0.0195%
혼합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305%	0.1000%	0.0100%	0.0195%
글로벌리츠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2805%	0.5500%	0.0250%	0.0195%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3205%	0.0800%	0.0100%	0.0195%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3205%	0.0800%	0.0100%	0.0195%
글로벌인덱스리스크컨트롤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305%	0.2000%	0.0100%	0.0195%
K200리스크컨트롤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300%	0.1200%	0.0100%	0.0150%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350%	0.2000%	0.0250%	0.0150%
밸류고배당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300%	0.0100%	0.0100%	0.0150%
중소형Best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300%	0.0100%	0.0100%	0.0150%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0.0700%	0.0100%	0.0150%
인컴앤그로스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0.0700%	0.0100%	0.0150%
유럽배당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0.0700%	0.0100%	0.0150%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0.0700%	0.0100%	0.0150%
인디아포커스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0.0700%	0.0100%	0.0150%
단기국공채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3510%	0.0100%	0.0100%	0.0150%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펀드의 특징

구분	기 준	운영보수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3510%	0.0100%	0.0100%	0.0150%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100%	0.0100%	0.0100%	0.0150%
고배당포커스30채권혼합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3600%	0.0100%	0.0100%	0.0150%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300%	0.0100%	0.0100%	0.0150%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300%	0.0100%	0.0150%	0.0150%
MMF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2805%	0.0100%	0.0100%	0.0150%
글로벌하이일드채권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2000%	0.0500%	0.0100%	0.0150%
베트남그로스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955%	0.0100%	0.0100%	0.0150%
스마트 롱숏 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955%	0.0100%	0.0100%	0.0150%
유럽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0.0500%	0.0100%	0.0150%
ELS지수연계솔루션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3510%	0.0100%	0.0100%	0.0150%
월드와이드컨슈머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0.0200%	0.0100%	0.0150%
글로벌테크놀로지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0.0500%	0.0100%	0.0150%
빅데이터국내주식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0.2500%	0.0100%	0.0150%
재팬인덱스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205%	0.0100%	0.0100%	0.0195%
팀챌린지자산배분C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955%	0.2500%	0.0250%	0.0150%
인공지능팀챌린지자산배분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955%	0.2500%	0.0250%	0.0150%
미국그로스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0.0500%	0.0100%	0.0150%
글로벌리치투게더주식재간접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0.0500%	0.0100%	0.0150%
코리아인덱스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255%	0.1200%	0.0100%	0.0195%
골드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3250%	0.0600%	0.0100%	0.0150%
미국주식인덱스(환오픈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455%	0.0500%	0.0300%	0.0150%
글로벌착한기업ESG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500%	0.1500%	0.0300%	0.0150%
탑픽스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450%	0.1000%	0.0300%	0.0150%
미국테크TOP10주식형(환오픈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5000%	0.0100%	0.0300%	0.0150%
미국자사주고배당주식형(환오픈형)	매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의	0.4305%	0.2500%	0.0300%	0.0150%

[※] 투자일임보수, 수탁보수 및 사무관리보수의 경우, 위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적용합니다.

[※] 이 보험은 투자형 상품으로 납입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납입원금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을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국내 및 해외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의 특별계정운용보수 이외에 수익증권 투자관련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계정에서 인출하여 사용합니다.

[※] 해외주식이나 채권 등 해외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새로운 펀드가 추가되거나 펀드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펀드 특별계정운용보수는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펀드명	펀드구성	성향	위험등급
ELS지수연계솔루션 재간접형	다양한 지수연계증권 등 주식관련 장외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	위험선호형	2등급 (높은위험)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전세계 상장된 인프라스트럭쳐자산에 관련된 주식, 집합투자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100% 이내	위험중립형	4등급 (보통위험)
네비게이터주식재간접형	국내 주식 100% 이내 투자	위험선호형	2등급 (높은 위험)
밸류고배당주식재간접형	국내주식 100% 이내 투자, 고배당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	적극투자형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중소형Best주식재간접형	국내주식 100% 이내 투자, 중소형주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	위험선호형	2등급 (높은위험)
글로벌배당인컴주식 재간접형	글로벌 주식 100% 이내 투자, 고배당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	적극투자형	3등급 (다소 높은위험)
글로벌테크놀로지주식 재간접형	전세계 상장된 기술 개발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혹은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기업 관련된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100% 이내로 투자	위험선호형	2등급 (높은위험)
빅데이터국내주식형	빅데이터기법을 활용한 종목을 선별하여 국내주식,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그리고 주식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	위험선호형	2등급 (높은위험)
월드와이드컨슈머주식 재간접형	전세계 선진 및 이머징 시장의 소비자 구매력 성장과 소비활동 증가에 관련되어 직간접적으로 혜택이 높은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100% 이내로 투자	적극투자형	3등급 (다소 높은위험)
유럽 배당주식 재간접형	유럽지역 주식 100% 이내 투자, 고배당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	적극투자형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유럽주식재간접형	유럽 지역의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	위험선호형	2등급 (높은위험)
미국그로스주식재간접형	미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이러한 우량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	위험선호형	2등급 (높은위험)
글로벌리치투게더주식 재간접형	전세계 증시에 상장된 일등 기업 및 혁신기업과 고소비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소비재 관련 기업의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	적극투자형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인컴앤그로스재간접형	미국 시장 중심으로 주식, 하이일드, 전환사채 100% 이내 투자	적극투자형	3등급 (다소 높은위험)
인디아포커스재간접형	인도 지역 관련 주식 100% 이내 투자	적극투자형	3등급 (다소 높은위험)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	중국, 홍콩 지역 관련 주식 100% 이내 투자	위험선호형	2등급 (높은위험)
베트남그로스주식재간접형	베트남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이러한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	위험선호형	2등급 (높은위험)
글로벌하이일드채권 재간접형	글로벌 고수익 채권 또는 이러한 채권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	위험중립형	4등급 (보통위험)
스마트롱숏재간접형	국내 주식 또는 국내 주식을 대상으로 한 롱숏 전략을 주된 운용전략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	안정추구형	5등급 (낮은위험)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펀드의 특징

펀드명	펀드구성	성향	위험등급
고배당포커스30채권혼합재간접형	국내주식(배당주중심) 30% 이내, 국내채권 70% 이내 투자	안정추구형	5등급 (낮은위험)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전세계 채권 100% 이내 투자, 채권 대상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	안정추구형	5등급 (낮은위험)
성장형	국내 주식 90% 이내, 국내 채권 10% 이내, 나머지 유동성자산에 투자	위험선호형	2등급 (높은위험)
팀챌린지자산배분C형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상장집합투자증권 또는 관련 파생상품 등에 100% 이내 투자, 나머지 유동성 자산에 투자	적극투자형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인공지능팀챌린지자산배분형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상장집합투자증권 또는 관련 파생상품 등에 100% 이내 투자, 나머지 유동성 자산에 투자	적극투자형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글로벌리츠형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 리츠에 70% 이내, 국내 채권 20% 이내, 나머지 유동성자산에 투자	적극투자형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	이머징마켓채권 100% 이내 투자	위험중립형	4등급 (보통위험)
단기국공채재간접형	단기국공채 100% 이내 투자	위험회피형	6등급 (매우 낮은위험)
베스트국공채재간접형	국내 국공채 100% 이내 투자	안정추구형	5등급 (낮은위험)
주식혼합형	국내주식 60% 이내, 국내채권 30% 이내, 나머지 유동성 자산 투자	적극투자형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	전 세계 대표적인 성장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90% 이내, 나머지 유동성자산에 투자	적극투자형	3등급 (다소 높은위험)
글로벌인덱스리스크컨트롤형	KOSPI200, S&P500, HSCEI지수 0% ~ 90% 이내 투자	적극투자형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	전세계 다양한 자산군(주식, 채권, 원자재, 단기자산 등) 100% 이내	적극투자형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BRICs주식형	BRICs 지역 주식 70% 이내, 나머지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	적극투자형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Index혼합형	KOSPl200지수 수익률 추종하는 국내주식 60% 이내, 나머지는 국내채권 및 유동성 투자	적극투자형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Ko-BRICs주식형	KOSPI200 인덱스 및 BRICs지역 주식 70% 이내, 나머기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	적극투자형	3등급 (다소 높은위험)
재팬인덱스형	일본지역 주식 및 국내외주식에 50% 이내, 나머지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	위험중립형	4등급 (보통위험)
K200리스크컨트롤형	KOSPI200지수 0 ~100% 이내 투자	적극투자형	3등급 (다소 높은위험)
MMF재간접형	신용등급이 우량한 채권, CD 및 어음 등의 단기금융상품 또는 이러한 단기금융상품 등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순자산의 100% 이내로 투자	위험회피형	6등급 (매우 낮은위험)

펀드명	펀드구성	성향	위험 등 급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	국내외 채권 100% 이내 투자	위험중립형	4등급 (보통위험)
채권형	국내 채권 95% 이내 투자	안정추구형	5등급 (낮은위험)
글로벌이머징마켓 혼합재간접형	이머징마켓주식 50% 이내, 국내채권 40% 이내, 나머지 유동성 자산 투자	위험중립형	4등급 (보통위험)
혼합간접형	국내채권 70% 이내, 해외주식 30% 이내, 나머지 유동성 자산 투자	위험중립형	4등급 (보통위험)
코리아인덱스형	국내 상장주식(코스닥 포함) 및 주식형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0% 이내 투자	위험선호형	2등급 (높은위험)
골드	국제 금가격을 추종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및 선물 그리고 골드와 귀금속 채굴 및 가공관련 기업들에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과 해외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	적극투자형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미국주식인덱스(환오픈형)	미국 주식시장 지수의 성과를 추종하기 위해서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 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	위험선호형	2등급 (높은위험)
글로벌착한기업ESG	기업의 지속성장과 사회적 책임 측면에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여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또는 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 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	위험선호형	2등급 (높은 위험)
탑픽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량적 모델 및 정성적인 판단을 활용하여 자산배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펀드로서, 집합투자증권, 상장집합투자증권(ETF),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100% 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에 투자	적극투자형	3등급 (다소 높은위험)
미국테크TOP10주식형 (환오픈형)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우량 대기업 주식 또는 이러한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100% 이내에서 투자	위험선호형	2등급 (높은위험)
미국자사주고배당주식형 (환오픈형)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주환원 성향이 높은 주식 또는 이러한 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등에 순자산(NAV)의 100% 이내에서 투자	위험선호형	2등급 (높은위험)

- ※ 이 보험은 투자형 상품으로 납입원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납입원금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을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 국내 및 해외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의 특별계정운용보수 이외에 수익증권 투자관련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계정에서 인출하여 사용합니다.
- ※ 해외주식이나 채권 등 해외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펀드 포트폴리오는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시장상황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에 따라 투자대상 및 자산별 편입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 [글로벌이머징마켓혼합재간접형, KO-BRICs주식형, BRICs주식형, 미국주식인덱스(환오픈형), 미국테크TOP10주식형(환오픈형), 미국자사주고배당주식형(환오픈형)] 편드의 경우, 별도로 환헷지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 또는 손실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글로벌셀렉트재간접형, 혼합간접형, 글로벌리츠형, 토탈리턴글로벌채권재간접형, 이머징마켓채권재간접형, 글로벌다이나믹멀티에셋형, 글로벌배당인컴주식재간접형, 인컴앤그로스재간접형, 유럽배당주식재간접형, 인디아포커스재간접형, 글로벌인프라주식재간접형, 글로벌하이일드채권재간접형, 유럽주식재간접형, 월드와이드컨슈머주식재간접형, 글로벌테크놀로지주식재간접형, 인공지능팀챌린지자산배분형, 팀챌린지자산배분(형, 골드, 미국그로스주식재간접형, 글로벌착한기업ESG, 탑픽스, 글로벌리치투게더주식재간접형, 차이나포커스재간접형, 베트남그로스주식재간접형,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글로벌인덱스리스크컨트롤형, 재팬인덱스형]펀드의 경우,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환헷지가 가능한 주요 외국통화에 대해서는 환헷지를 실행합니다. 그러나 펀드 내 설정과 해지, 시장상황, 환헷지 비율 등에 따라 완전한 환위험 회피가 안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향후 새로운 펀드가 추가되거나 펀드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투자대상 중 보험관련 법규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제한이 있는 경우 펀드의 운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펀드 포트폴리오 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자료는 보험약관의 전체내용을 요약한 것이므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보험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펀드의 선택 및 변경

- (1)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펀드 중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우에는 펀드별로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펀드별 기본보험료는 5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 (2) 계약자는 보험년도 중 연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기본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중 연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펀드적립액의 이전 또는 펀드의 자동재배분에 따른 펀드의 편입비율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펀드설정일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펀드설정일부터 3개월이 지난후부터 가능합니다.
- (4) 회사는 펀드적립액의 이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다만, 이전하는 펀드적립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5) 보험계약자의 '변액보험 가입성향 진단'에 따라 펀드의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펀드자동재배분

- (1)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일부터 펀드자동재배분 주기(3개월, 6개월 중 계약자가 선택한 주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때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로 자동재배분됩니다. 다만, 펀드자동재배분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 (2) 보험기간 중 펀드 변경에 따라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의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재배분되며, 이 경우에도 계약일부터 펀드자동재배분 주기(3개월, 6개월 중 계약자가 선택한 주기) 단위로 자동재배분됩니다.
-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계약유지보장'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채권형펀드와 MMF재간접형 펀드의 편입비율의 합을 60% 미만으로 설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권형펀드와 MMF재간접형 펀드의 펀드자동재배분 후 적립액의 합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의 60% 미만인 경우해당 펀드자동재배분 실행일에는 펀드자동재배분을 할 수 없습니다.
- (4)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5)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경우에는 펀드자동전환옵션을 선택할 수 없으며, 펀드자동재배분을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펀드자동전환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펀드자동전환옵션

- (1) 계약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펀드자동전환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채권형펀드 또는 MMF재간접형 펀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계정적립액이 계약자가 정한 목표수익률을 달성할 때 계약자가 선택한 채권형펀드 또는 MMF재간접형 펀드를 제외한 펀드의 적립액 전액을 계약자가 선택한 채권형 펀드 또는 MMF재간접형 펀드로 자동이전합니다.
- (2) 계약자는 최초로 펀드자동전환옵션 선택시 110%에서 200% 범위내에서 10% 단위로 목표수익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3) 목표수익률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대비 특별계정 적립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 (4) 회사는 펀드자동전환옵션 실행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가 선택한 채권형 또는 MMF재간접형으로 자동이전되었음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5) 목표수익률 도달시 펀드자동전환옵션은 해제되며, 이후 펀드자동전환옵션을 재신청시 선택할 수 있는 목표수익률은 직전 선택하였던 목표수익률 이상을 10%단위로 재신청해야 합니다.(예: 직전 달성하였던 목표수익률이 120%인 경우, 재신청시 130% 이상 선택가능)
- (6)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전환옵션을 매년 4회 이내의 범위에서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7) 펀드자동전환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없으며, 펀드자동전환옵션을 취소한 경우에 한하여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8) 펀드자동전환옵션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되며, 펀드자동이전 시 펀드자동전환옵션 실행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체합니다.
- (9) 펀드적립액의 이건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이건 요청일부터 펀드적립액의 이건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펀드자동전환옵션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최저연금적립액 미보증

- 최저연금적립액: 연금개시나이 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경우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액을 말합니다.
- 이 계약은 최저연금적립액 미보증형으로, 연금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최저연금적립액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추가납입보험료

- (1) 적립형 :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로 구분됩니다.
 - 가.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매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에 기본보험료와 함께 정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연금개시시점 전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1회에 10만원 이상으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변경 및 중지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및 변경, 중지를 신청한 경우 해당내용은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익월 납입기일부터 적용합니다.
 - 해당 시점의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차회 이후의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때 납입되지 않은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 나. 수시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시점 전까지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수시추가납입보험료는 해당월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납입가능합니다.
 - 다.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 ① 계약자가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납입총액의 2배 이내로 합니다. 다만, 월정기 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의 1회 최저납입금액은 10만원으로 합니다
 - ② 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경과 기간별로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1회에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해당월까지의 납입할 기본보험료(선납포함) × 200% -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 ③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로 합니다.

(2) 거치형

- 가.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 외에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연금개시시점 전까지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나.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0%이내이며, 연간(보험년도 기준) 납입한도는 기본보험료(일시납보험료)의 20% 이내로 합니다.
- 다.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더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로 합니다.

보험료의 선납에 관한 사항

- 가.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제외하고 6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여 납입할 수 있으며, 선납보험료는 기본보험료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나.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며, 해당 보험료는 월계약해당일에 대체합니다.

변액보험 가입 시 주의사항

-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위험: 변액보험은 투자형 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을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하며 회사는 투자손실에 대하여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채권, 주식, 수익증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운용자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 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환율변동 위험: 해외주식이나 채권 등 해외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환율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하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특히,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주식은 만기가 없고 가격 변동성이 커 환위험 헷지금액을 확정하기가 어렵고 펀드 변경 등의 선택에 따라 입·출입 자금의 관리가 어려워 환위험 헷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변액보험 보험계약대출 이용방법 변경특약

- 계약자는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 관련 내용에도 불구하고 "특별계정 지급방식"과 "일반계정 지급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특별계정 지급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은 주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일반계정 지급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보험계약대출은 변액보험 보험계약대출 이용방법 변경특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계약자가 일반계정 지급방식을 선택하여 보험계약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일반계정에서 대출신청일에 지급되며, 회사가 해당 보험계약대출금액을 지급하더라도 특별계정에서 보험계약대출적립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정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 평균한 이율로 합니다. 이 때, 공시이율은 주계약의 체결시점에 판매 중인 동일한 상품군(저축성,연금,보장성)의 금리연동형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주계약 사업방법서에 따라 보험종목이 전환된 경우는 전환시점을 기준으로 전환된 계약에 해당하는 상품군의 공시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 회사는 특별계정 지급방식과 일반계정 지급방식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에 대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내하고, 계약자는 특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각 지급방식에 따른 장단점 등 비교설명
- (2) 각 지급방식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액 지급일
- (3) 각 지급방식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이율
- 이 특약을 적용하여 주계약의 보험계약대출 이용방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1) 계약자적립액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 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 나.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하고,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 ① 적립형: 인출 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② 거치형: 인출 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이 기본보험료의 30% 미만의 금액인 경우
 - 다.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중도인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계약자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 다만, 중도인출수수료는 연 4회까지 면제됩니다.
 - 라. '가'에도 불구하고,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총 인출금액(중도인출금액과 정기중도인출금액의 합계)이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마. 인출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회사에서 정한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 바.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합니다.
- (2) 정기중도인출서비스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적립형의 경우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후부터, 거치형의 경우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이하 '정기중도인출금액'이라 합니다)만큼 매월 자동적으로 중도 인출하여 지급 받을 수 있는 정기중도인출서비스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하 '정기중도인출서비스'라 합니다.)
 - 나. 계약자는 '정기중도인출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정기중도인출서비스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 계약자는 '정기중도인출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정기중도인출금액'은 다음의 범위 이내에서 선택가능하며 매회 지급금액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기중도인출금액'은 10만원이상 만원 단위로 선택해야 합니다.
 - ① 적립형: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0.1% ~ 3.0% 이내
 - ② 거치형: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0.1% ~ 0.5% 이내
 - 라. 회사는 '정기중도인출금액'을 「신청일 + 제2영업일」이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을 최초 지급일로 하여, 매월 지급일에 지급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도래하는 영업일에 지급하며, 해당월의 지급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지급일로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

- 마. '정기중도인출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바. '정기중도인출서비스'는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1)'의 '가'에서 정한 중도인출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기중도인출서비스'를 중지합니다. 다만, '②' 내지 '④'에 따라 '정기중도인출서비스'가 중지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서비스가 종료되었음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① 계약자가 '정기중도인출서비스'의 중지를 신청한 경우
 - ② '정기중도인출금액' 인출 후 특별계정 계약자적립액이 다음의 금액 미만인 경우
 - 적립형: 500만원 미만
 - © 거치형: 기본보험료의 30% 미만
 - ③ '정기중도인출금액'이 인출할 당시 해약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된 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 ④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총 인출금액(중도인출금액과 정기중도인출금액의 합계)이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 이상인 경우
- 아. '정기중도인출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 (1)「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 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향후 관련법령이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합니다.
-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 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안내자료 및 보험증권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향후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이 상품의 약관 및 사업방법서상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부여되는 [장래의 권리(중도부가 특약, 전환 특약 등 포함)]의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ABL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최저사망보험금) 및 특약((무)실적배당연금전환특약 및 (무)하모니변액연금전환특약의 경우, 최저보증하는 보험금에 한함)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보호 한도는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이며,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하여 1인당 "1억원까지" 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사항 기본 확인

• 계약자는 계약 청약시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에 관한 사항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능)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신 후 우편 송부하거나, 영업시간 내에 가까운 고객센터(CSC)에 방문하거나 콜센터(1588-6500)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당사 홈페이지(www.ablife.co.kr)에서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합니다. 다만,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합니다
- 회사는 보험료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에 관한 사항

•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배당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세제혜탄

-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 당해년도 납입하신 특약보험료에 대하여 소득세법이 정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납입금액 중 연간 100만원 한도로 납입금액의 100분의 12를 세액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 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저축성보험 부리이율에 대한 사항

• 이 상품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위험보험료, 부가보험료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보험료만 특별계정에 투입,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적립됩니다.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제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금 등의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보험금 등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회사가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할 때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서만 약관에서 정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며,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이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부터는 이자를 부리(지급)해 드리지 않습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이 보험은 투자형 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고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이내 자살시' 지급 제한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 참조

기존계약 해지후 신계약 체결시 불이익 사항

•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에 관한 사항

• 적용대상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1) 계약자는 보험수익자에게 정신 또는 신경계의 장애로 영구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스스로 올바른 의사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제출한 경우 등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중에서 보험금의 대리청구인(2인 이내에서 지정하되, 2인 지정시 대표대리청구인을 지정. 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도 다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 보험수익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 보험수익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2) '(1)'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적용대상(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의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단체취급특약에 관한 사항

이 특약의 가입 대상단체는 단체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2종 단체 :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 제3종 단체 : 그 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불만족 접수 안내

〈불만 접수 안내〉

- 우편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47 (구.여의도동 45-21) ABL 타워 6층 소비자부 (우)07332
- ABL생명 콜센터 : 국번없이 1588-6500
- 팩스 : 02-3787-8719
- 인터넷: www.abllife.co.kr > 전자민원접수 > 불만접수창구 > 불만의 소리
- e-mail : customer@abllife.co.kr
- 기타 상담(문의) : 전 영업점 및 지급 창구, 보험설계사
- 수술/입원/사망보험금 관련 상담 : 전화 1588-4404

• 02-2262-6600 / www.klia.or.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

• 국번 없이 1332 / www.fss.or.kr

보험계약관련 조회시스템 운영

- 본 상품안내장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계약자께서는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및 가격공시실 : www.abllife.co.kr(당사 홈페이지)



